

가설기자재 성능 검정 합격품 표시인 “안”마크가 절단된 단관 비계용 강관의 사용 가능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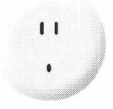


단관 비계용 강관을 절단하여 사용 할 경우 형태가 변경되어 (예 : 6M → 4, 3, 2M) 양쪽에 각인된 “안”자 마크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 “안”자 마크가 절단된 단관 비계용 강관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 및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 검정 절차에 관한 규정(제98-65호) 제10조에 단관 비계용 강관은 성능검정을 받고 합격하였을 경우 “안”자 마크를 각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성능검정에 합격한 단관 비계용 강관을 비계용 외의 필요한 장소에 사용하기 위해 절단하는 과정에서 각인된 “안”자 마크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검정 당시와 강도 등 구조적인 성능에 변함이 없다면 사용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의4에 의한 안전관리 사용기준이 배치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비와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관리비는 근본적으로 그 목적과 계상 방법 및 사용기준을 달리하고 있음.

- 따라서 각 법상의 취지에 맞게 안전관리비의 계상을 달리하고 그 사용기준을 따라 사용·정산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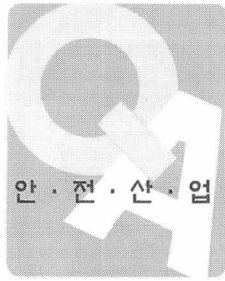
행정적으로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을 잘못 기재한 사항도 과태료부과 대상인지



업체의 행정적으로 안전관리비가 아닌 항목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의 확인 결과 밝혀져 수정을 통해 비 항목 부분제외 또는 항목조정을 실시한 후에도 항목 별 적정사용 금액기준에 맞고, 총 법정 안전관리비 이상 사용하였다면 적정 사용으로 보는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도급인이 사업주는 당해 공사를 위하여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향후 정산 등을 통하여 안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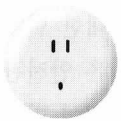


있는지



건설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는 대상 사업장에 한하여 발주처와의 협의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기술지도를 받지 않을 것을 양해하였다 하더라도 기술지도 면제사업장이 될 수 없음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시 공제기준이 되는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 재해예방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았을 경우 안전관리비의 공제를 계약내역서상 금액과 설계내역서상의 금액 중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산업 안전보건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6조의5, 시행규칙 제32조의3 별표 6의2 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기준 2항 다목에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수급인에 대하여 발주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의 안전관리비는 계약내역서상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말함.

용접작업자가 6월에 1회이상 특수 건강진단 대상인지 여부



(1)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화학적 성분인 일산화탄소, 산화철, 산화규소, 산화망간 등이 6월 1회이상 특수 건강진단 대상인지 여부

(2) 작업특성상 간헐적으로 용접작업이 이루어지고 용접작업자가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작업부서 전 근로자를 특정화학물질 취급작업자로 보아야 할 것인지

- 또한, 망간의 함유량 기준으로 특정화학물질로 분류하기보다는 작업 공정상 망간이 얼마나 비산하느냐에 따라 판단하여도 되는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보건규칙 제14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화학물질 등 취급업무”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9조제4항에는 “연, 4알킬연,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는 당해물질의 가스·증기·분진 등을 발생하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용접근로자의 경우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화학적 성분인 일산화탄소, 산화망간 등에 대하여도 6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간헐적인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해당 유해인자의 특수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로 정한 바 없으므로 유해인자의 취급기간, 취급량, 작업방법 등에 관계없이 특수검진을 실시하여 함.

